

## 명예훼손소송과 그 대응

### - 미국언론의 경우 -

이 글은 언론인 橋本正邦 씨가 일본의 신문연구지 '86년 2월호에 기고한 것이다.

편집자주

「너는 (고릴라)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신문이 그렇게 쓴다면 이를 항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는 고릴라에게 자기와 같은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인 같으면 웃어넘기든가 거껏해야 동물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보도때문에 제소를 당한 일이 있다. 1985년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지는 필라델피아 동물원이 새로 들여온 고릴라에게 붙일 이름을 공모, 당선된 이름과 함께 낙선된 '킹'이란 이름도 게재했다. 그러자 킹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방검사가 「나를 고릴라와 같다고 보도하여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신문사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것은 조사보도기자편집자협회(IRE)의 1985년 년차 총회에 보고된 실화이다. 보고자는 필라델피아에서 1개월 반 사이에 2개의 신문사에 대해 8개의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전하면서 「필라델피아는 미국 제일의 명예훼손소송도시가 되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필라델피아에 한한 일이 아니며 미국전역에서 미디어가 골치를 앓는 문제로 되어 있다.

원래 미국인은 권리의식이 강하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강하게 항의를 한다. 특히 많은 인종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우며 무슨 일이든지

「법정에서 흑백을 가리자」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 때문에 변호사도 인구비례로 보면 일본의 15 배나 된다. 더구나 변호사와 익사는·수입이 높고 고급주택지의 상당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 변호사 지망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도 생기게 되어 그들은 「사건의 발굴」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와서는 미디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배상액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고소건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CBS-TV에 대한 소송에서의 배상청구액은 1억 2천만달러, 폴 랙조르트 상원의원의 매크러치 신문그룹에 대한 소송에서의 청구액은 2억 5천만달러나 된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대한 윌리엄 태블래리스(모빌사 사장)의 소송에서는 배상액도 2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평결하고 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경우에는 CBS의 뉴스프로를 적대시하는 보수층에서 모금하여 재판비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든지 걱정이 없었던 특별 케이스였다. 그러나 돈이 별로 많지 않은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 이런 제소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측이 「승소했을 때에는 배상금의 몇 %를, 화해가 되었을 때에는 몇 %를 받는다. 패소했을 때에는 변호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제소를 권유한다. 이른바 <성공보훈>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소송건수와 배상청구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제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소송비용만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법정작전준비때문에 사의 경영진과 편집진 이 오랜 시간 동안 회사 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런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는 률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재판비용으로서 미국의 미디어는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까. 이것을 정확하게 밝힐 숫자는 없다. 참고로 1985년 10월 달라스시에서 열린 국제신문재무책임자협회(INFE)의 년차 총회에서 발표된 제임스 조지 변호사의 보고의 일부를 소개한다.

「1979년 이래 명예훼손소송배심재판에서의 원고의 승소률은 80% 내지 90%, 항소심에서도 거의 같은 률로 원고가 승소하고 있다. 신문사의 지출에는 세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변호사의 비용과 재판 비용이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원고가 중산층이고 대도시 이외에서 열리는 재판이더라도 명예훼손의 배심재판비용은 1974년의 경우 1만 달러(약 950만원)였으며 현재는 5만 달러(약 4천 7백 5십만원)나 된다. 동부의 대도시에서의 수심재판에서 피고가 지불하는 재판비용은 보통 25만달러 (약 2억 3천 7백 5십만원)에 이른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나 모빌사 사장 등의 경우에는 2백만달러(약 19억원)에서 7백만달러(약 67억원)에까지 이른다. 미국 전체를 평균해보아도 최소 5만 달러(약 4천 7백 5십만원) 이상은 될 것이다. 제 2의 경비는 배상금 또는 화해금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10 만 달러(약 9 천 5 백만원) 내지 100 만 달러(약 9 억 5 천만원) 범위 내이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화해로 해결을 보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제 3 의 경비는 사건변호를 위해 사의 스태프가 변호사와 함께 쓰는 (시간)이라는 간접적인 지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건에 관련된 편집자와 기자는 조서 작성이라든가 재판에 입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사실을 변호사에게 설명한다든가 증언의 준비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편집국 전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쉽고 일 자체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지 않다. 우리들 자신도 최근 재판준비가 편집국 전체의 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문사가 화해로 해결하자고 주장, 그렇게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재판비용이나 배상금을 위한 보험가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이 작년에 급등했다. 보험불입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소송전문인의 쥬디스 에프스타인 변호사가 1985 년 10 월에 열린 AP 편집국장회(APME)의 년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발행부수 17 만 5 천부의 한 주간지의 100 만 달러 보험의 불입금이 1984 년에 750 달러로 었었는데 1985 년에는 2,940 달러로 올랐으며 또 발행부수가 61 만 5 천부의 한 일간 무료지는 150 만 달러의 보험에 대해 1984 년의 불입금이 1 만 2 천 달러였는데 1985 년에는 1 만 6 천 6 백 75 달러로 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까지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작년 국제신문발행인협회(FIEJ)의 동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왔던 파트리엇트 렛자사의 프레스고트 로우 사장이 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도 당연할 것이다.

「미국시민은 이제 변호사는 넘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불행하게도 상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호사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법률은 그 입법정신과는 동떨어진 상해에서 미디어의 이른바 과장행위를 처벌하는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프레스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은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요법소송과 비교될 수 있다. 이 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판결이 잇달아 일어나고있다. 때문에 도시의 의사들은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은 보험에 지불되는 만큼의 부담을 환자들에게 전가 한다. 이러한 상태를 우려한 각주정부는 부정요법의 배상액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거액의 배상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잇달은 다면 미디어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상해로 몰려 배상금액에 상한을 정하는 움직임이 표면화 될지도 모른다. 」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작년 미국에서 열린 프레스관계 각 단체도 위의 년차 총회에서는 거의 모두가 재판에 관한 보고와 토의시간을 가졌다. 미국신문발행인협회(ANPA) 년차 총회에서는 경영효율 문제가 초점이 되어 비용은 들겠지만 상시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체제를 굳히는 편이 결국은 경비를 줄이게 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즉 배상금,

화해금의 액수와 보험지불금의 급등을 생각하면 게재에 앞선 기사의 사전심의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일이 필요하며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동경에서 열린 국제신문발행인협회(FIEJ) 총회에서도 매크러치 뉴르페이퍼즈지의 제임스 매크러치 회장은 「미국에 있어서의 신문과 법률」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사법수속 중에 있는 법제상의 압력과 함께 명예훼손소송의 압력에 관해 보고했다.

존 라일리 기자가 그의 소속사의 내셔널 로우저널지와 미국신문발행인협회(ASNE)의 기관지 「블리틴」에 게재한 보고(게재 전 기사심의회는 만능약이 아니다)는 미국신문사의 편집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을 피하기 위해 또는 실제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귀중한 문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보고를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의 하나는 미국신문에서는 기사에 관해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일. 변호사로 하여금 기사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로 되어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대·중 신문사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내에 상주시키든가 외부의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 전화를 통해 수시로 불러들이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소 신문사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편집자와 변호사가 협력하여 「방어보도」(Defensive Reporting)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방어보도)의 요소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① 비밀정보원만에 의존하는 기사는 게재하지 않는다 ② 기사에 관해 편집국내에서 찬반양론이 있을 때 논의된 메모는 보존하지 않는다. ③ 공정하게 보일 수 있는 기사스타일을 확립하여 모든 개개의 기사를 여기에 부합하도록 한다.

「블리틴」(Bulletin)특집은 또 「편집자의 입장에서 본 이상적인 변호사」,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이상적인 편집자」에 관해 설문, 편집자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 「어느 때 왜 변호사를 부를 것인가」라는 설간으로 편집자들에게 글을 쓰도록 했다. 즉 편집자와 변호사의 상담은 일상적인 일로 되어버렸다는 관점에 서서 병자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방안을 찾아내려는 자세인 것이다.

록키 마운틴 뉴스지의 디브 바드러 편집국 차장은 「이상적인 변호사, 이상적인 편집자」에 대한 회합들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내놓았다. 「편집자의 입장에서 본 이상적인 변호사란 아주 간단하다. 애매한 기사를 어떻게든지 게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발견해 주고, 비공개적 공적 회의를 공개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신문을 재액으로부터 지켜주는 변호사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이상적인 편집자도 역시 간단하다. 명쾌하고 문서의 뒷받침이 있는 기사, 게재전에 변호사가 보아서 문제될 것이 없고 제소되더라도 변호하기 쉬운 기사를 갖추는 편집자, 그리고 곧 와달라든가. 주말에 와달라든가의 부탁을 하지 않는 편집자이다. 」

편집자 개개인의 이상적인 변호사에 대한 회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락을 하면 곧 바로 와주는 사람」, 「기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우리와 같이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욱 좋다」. 「기사에 관해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 명예훼손법에 따른 질문도 좋고, 보다 나은 상식에 근거한 질문이라도 좋다」. 「우선 유능한 변호사이어야 한다. 공개된 정부, 국민의 알 권리, 신문계에서는 허용되는 과오에 대해 우리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우리들이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 이상의 회담내용을 보면 편집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호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음에도 「어느 때, 왜 변호사를 부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편집자들의 회합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어떤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우리들은 곧 바로 적의를 나타낼 것인가. 그렇게 되면 고소로까지 발전할 것은 확실하다. 정중하게 대처하면 피소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명예훼손소송에 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편집자나 기자가 과오를 범했을 경우가 많다. 큰 기사는 충분히 심의되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3, 4 패러그래프의 일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기사가 문제를 야기시키기 쉽다」, 「전에 비해 가끔 변호사를 부르는 일이 많아졌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변호사를 부르지 않으면 안되게끔 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 사회에 서투른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부른다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런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또 정확해지고 공평해질테니까」.

변호사를 부른다는 말을 듣기만 해도 창문을 통해 달려지폐가 날아나가는 것이 보인다. 보도에 관련된 사람이 법률해석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우리들이 기사 안에 취급되는 사람들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도록 편집국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수만 있다면 변호사의 필요성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변호사에게 기사용의를 부탁하기 전에 그 기사가 그 만큼의 시간, 노력, 경비를 들일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블리턴」지의 특집은 또 각주의 신문편집인협회가 설립한 「핫라인」(Hotline 각 신문사가 전화로 프레스관계의 문제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제도), 명예훼손의 모종재판을 실시하는 기자, 편집자연수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미디어는 명예훼손소송건수의 증대와 패소율의 증대, 변호비용의 증액 등을 우려하여 그 대책에 대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방어전만으로는 그 전도에 서광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간에 반격의 필요도 있음직하다. 뉴욕 타임즈지 등의 변호를 맡아온 후로이두 에이브럼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단계별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다. ① 정정을 장려한다.그리고

재판의 목표는 출판물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명예의 회복에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② 손상된 감정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설정하여 처벌적 배상은 철폐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③ 명예훼손소송의 원고, 피고 쌍방이 한층 더 조심하도록 변호비용의 부담방식을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원고나 피고가 충분한 근거도 없이 고소하고 응소하는 경우 패소하는 측에 승소한 측의 변호비용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권한을 재판관에게 주도록 한다. ④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엄한 비판이 허용되도록 명예훼손법의 해석을 바꾼다. 여기에는 무엇이 「의견」 인가를 넓게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찰츠 슈미트 하원의원(뉴욕주출신 ·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다. 동법안에는 금전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보도된 내용은 오보였다는 선고만의 판결을 구하는 고소권을 공인에게 준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상과 같은 다섯단계의 대처방안이 실제로 실현만 된다면 미디어측이 한 숨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실현은 미국의 현실로 보아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일본의 미디어는 지금으로서 는 미국만큼 고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미국의 변호사들이 일본내에서 개업할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인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 일본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